

	환경경영시스템	문서번호	HW-EP-811
		개정일자	2023.08.01
	환경운영관리 규정	개정번호	0
		쪽 번호	1 / 33

□ 목 차 □				
1. 적용범위 2. 목 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 절차 6. 기록 관리 7. 관련 문서				
0	2023.08.01	ISO14001 인증 추진에 따른 최초 제정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 정 사 유 및 개 정 내 용		
구 분	작 성 자	검 토 자		승 인 자
부서명 / 직책	안전환경관리부 주 입	안전환경관리부 부 장		대 표 이 사
성 명	공 도 현	김 병 후		이 수 대
서 명				
일자(년/월/일)	2023/08/01	2023/08/01		2023/08/01

	환경경영시스템	문서번호	HW-EP-811
		개정일자	2023.08.01
	환경운영관리 규정	개정번호	0
		쪽 번호	2 / 33

1. 적용 범위

이 규정은 모든 현장 개설 및 착공에서부터 공사시공, 공정관리 및 실행예산 관리에 관련하여 환경경영과 관련된 업무에 적용한다.

2. 목적

당사의 현장에서 공사 수행 중에 발생하는 환경경영 관련 업무에 대하여 그 규정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공사를 수행하고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하여 고객만족과 환경보호 및 근로자의 생명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환경측면

환경과 상호 작용하는 조직의 활동, 제품 및 서비스의 구성요소를 말하며, 중점관리 환경측면이란 심각한 환경변화를 초래하거나 미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3.2. 환경영향

조직의 활동, 제품 및 서비스에서 야기되는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변화를 말한다.

3.3. 건설공사의 정의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발전소 등),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소각장, 수처리설비 공사 등)

3.4. 건설폐기물

건설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5t 이상의 폐기물이다.

3.5. 환경관리계획서

- 1)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폐기물, 대기환경 등의 항목을 관계 법령 기준에 따라 관리하기 위해 수립되는 계획을 말한다.
- 2) 환경관리계획서에는 현장의 환경 목표와 세부 목표를 정확히 명시하는 한편 이를 시행하기 위한 관리 조직 및 책임 소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또 오염원별 환경 관리 내용을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 1) 조직의 환경경영 방침을 규정하고 권한을 위임하여야 하며, 환경경영시스템을 위한 적절한 수준의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 제공을 보장

	환경경영시스템	문서번호	HW-EP-811
		개정일자	2023.08.01
	환경운영관리 규정	개정번호	0
		쪽 번호	3 / 33

- 2) 환경경영 방침 및 목표의 승인
- 3) 환경경영시스템 매뉴얼 및 경영검토보고서 승인
- 4) 현장 환경측면 점검 결과 및 조치 사항 승인
- 4.2. 본사 주관 부서
 - 1) 환경경영 방침, 목표, 추진계획 수립 및 배포, 이행 확인
 - 2) 환경관련 회사표준과 환경경영방침에 일치하도록 업무수행
 - 3) 환경경영시스템 매뉴얼 제·개정 및 경영검토보고서 검토
 - 4) 현장 환경측면 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 검토
 - 5) 재해발생시 대책 수립 및 지원
 - 6) 리스크 관리 실행 관리 및 검토 승인
- 4.3. 현장소장(현장대리인)
 - 1) 현장 환경경영 목표의 승인
 - 2) 환경 활동(매뉴얼, 규정, 프로세스, 지침서, 업무지시 등)의 준수
 - 3) 현장 환경관리계획서의 승인
 - 4) 현장 환경경영시스템 실행을 위한 수준의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제공
 - 5) 현장 비상사태 대비 훈련계획 승인 및 실행
 - 6) 현장 재해발생시 현장관리에 의한 신속한 대응 지시
 - 7) 현장 환경측면 파악 및 영향평가 승인
 - 8) 현장의 환경관련 부적절한 행위의 시정을 위한 시정조치요구서 승인
 - 9) 현장 환경활동 관한 환경교육, 환경점검 등 환경 경영시스템 조직 구성 및 문서 승인
 - 10) 환경관련 법규의 검토 및 승인
 - 11) 환경민원 관리의 승인
 - 12) 기타 환경 관련 법규 및 사내 매뉴얼, 규정 등 환경기준의 준수
- 4.4. 총무(총무 업무 담당자)
 - 1) 현장 환경경영 목표의 실행/검토
 - 2) 환경 활동(매뉴얼, 규정, 프로세스, 지침서, 업무지시 등)의 실행/검토
 - 3) 현장 환경관리계획서의 실행/검토
 - 4) 현장 비상사태 대비 훈련계획의 실행/검토
 - 5) 현장 재해발생시 현장관리에 의한 신속한 대응
 - 6) 현장 환경측면 파악 및 영향평가 실행/검토
 - 7) 현장의 환경 관련 부적절한 행위의 시정을 위한 시정조치의 실행/검토
 - 8) 현장 환경 활동에 관한 환경교육, 환경점검 등 환경 경영시스템 조직 구성 및 문서 실행/검토
 - 9) 환경 관련 법규 파악 및 관리
 - 10) 환경민원 관리
 - 11) 기타 환경 관련 법규 및 사내 매뉴얼, 규정 등 환경기준의 실행/검토

	환경경영시스템	문서번호	HW-EP-811
		개정일자	2023.08.01
	환경운영관리 규정	개정번호	0
		쪽 번호	4 / 33

5. 업무절차

5.1. 현장 개설 및 착공

- 1) 현장소장은 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파악하고 현장 개설 준비를 철저히 한다.
- 2) 공무담당은 계약서, 시방서, 사내 규정 등을 토대로 아래 사항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검토하고, 현장소장의 승인을 얻은 후 고객의 요구시 고객(발주처)에게 제출한다.
 - (1) 공정표
 - (2) 중요 자재 투입 및 발주 계획서
 - (3) 품질보증계획서
 - (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5) 환경관리계획서
- 3) 현장소장은 계약서 및 기술시방서를 검토한 후 고객의 요구자료(세부 공정표, 자재승인 요청서, 기타 등)를 준비하여야 한다.
- 4) 현장소장은 필요시 관련 부서로부터 다음과 같은 서류를 배부받는다.
 - (1) 공사관리부 : 도면, 계약 내용서, 기술시방서 기타 등
 - (2) 원가관리부 : 자재 집계표 기타 등
 - (3) 안전환경관리부 : 매뉴얼 및 규정(안전보건, 환경 시스템 문서)
- 5) 착공준비
 - (1) 현장사무실 및 자재 야적장 확보
 - (2) 필요 공구 및 선 투입될 주요 자재 청구
 - (3) 현장사무실 개설에 필요한 사무집기 준비
 - (4) 착공계, 현장 대리인계, 안전관리자 선임계, 기타 기술요원계 제출

5.2. 환경관리

- 1) 환경관리는 **환경관리계획서**에 반영하여 시행하며, 환경관리계획은 환경경영 매뉴얼, 환경관리 규정 및 환경관리지침서를 반영하여 작성한다.
- 2) 본사 주관부서는 환경 방침 및 목표, 환경 측면파악 결과, 내부심사, 환경점검, 사고분석, 환경 및 기타 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환경관리 지침을 수립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관련 현장에 배포한다.
- 3) 환경관리지침에는 운영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 4) 현장소장은 리스크관리 결과, 환경측면 파악 결과, 위험성 평가 결과 나타나는 작업장, 프로세스, 시설 기계, 운영 절차 및 작업조직별 위험성 및 환경측면에 대한 관리계획과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수립하여 실행한다.

5.3. 운용관리 절차

- 1) 환경경영체제는 환경과 관련 모든 공정이 관리 상태에서 수행되고 있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한다.

	환경경영시스템	문서번호	HW-EP-811
		개정일자	2023.08.01
	환경운영관리 규정	개정번호	0
		쪽 번호	5 / 33

- (1) 중요한 위험관리와 관련이 있는 활동을 구분하고, 환경측면 영향평가 규정에 위해요소를 파악하여 개선한다.
- (2) 회사가 사용한 인적자원, 물적자원 및 관리적 측면의 중요한 환경영향에 관련된 절차를 수립, 유지하고, 협력업체에게 관련된 절차와 요건을 전달한다.
- (3) 문서화된 절차가 없음에 따라 환경경영방침과 환경목표, 세부목표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발생할수 있는 경는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해야한다.
- 2) 관련된 작업절차는 규정 및 표준에 규정된 운영 기준에 따라 유지 관리한다.
- 3) 관련된 확인 가능한 중요한 영향평가에 관해서는 환경측면 영향평가 규정에 따라, 유지하며 공급자와 계약자에게 관련 절차 및 요건을 전달한다.
- 4) 운영관리 절차를 개발하거나 수정할 시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 5) 운영관리 활동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1) 신규 주요 프로젝트 수립, 작업절차변경, 지원 및 자산관리, 신공법 시공 전 공정과 관련하여 사고 예방 및 유해 요인 방지를 위한 활동
 - (2) 내부 및 외부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고 있음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
 - (3) 변화하는 환경 관련 요건을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경영활동

5.4. 유해 위험 예방 조치

각 팀장은 시공 및 업무 활동함에 있어 직원의 위험과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위험예지 지적확인
환경 담당자는 환경측면 영향평가에서 도출된 평가에 대한 지적 확인을 실시하고 작업에 임한다,
- 2) 방지시설
 - (1) 환경 관련 지침서에서 정하는 장비 및 설비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현장에 투입(반입)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3) 환경교육
 - (1) 환경 방침 및 목표를 실천하고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규정**에 따라 전 직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한다.
- 4) 환경담당자는 현장 순회점검 시에 발견된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작업자 또는 관리자에게 시정할 것을 지도 조언하며, 특히 중대한 환경영향이 인정될 때는 시정조치 요구서를 발부할 수 있다.
- 5) 시정조치 요구서의 발부
 - (1) 환경담당자의 시정요구서는 환경관리팀장의 승인을 얻어 발부한다.
 - (2) 개선 담당 책임자는 그 요청사항의 개선이 시급한 사항으로 인정될 때에는 즉시 개선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선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개선 담당 책임자는 개선을 완료하였거나 개선계획 검토가 필요하여 시일이 요구되는 등의 사유가 있을 시에는 시정조치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시정조치요구서를 발부한 담당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환경경영시스템	문서번호	HW-EP-811
		개정일자	2023.08.01
	환경운영관리 규정	개정번호	0
		쪽 번호	6 / 33

5.5. 환경업무 총괄표

1) 현장소장 및 총무 필수 업무

NO	항 목	관리 POINT	비 고
1	대관인허가	- 비산먼지/특정공사 신고에 반영된 환경시설과 현장 설치 사항 일치여부 - 건설/지정폐기물 신고서에 반영된 폐기물종류와 현장 발생 폐기물 일치여부 - 신고서상 공사기간과 실제 공사기간 일치여부	특히 비산먼지 중요
2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처리비용 적정성	- 현장 설명회를 통해 경쟁 입찰후 최저가 업체선정 * 대상 :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 폐합성수지 * 단가계약(원/㎡)원칙 - 폐기물 종류별 물량(㎡또는 TON)에 맞게 계산서가 발생되고 있는지 확인	
3	폐기물분리보관	- 건설폐기물 종류별 분리보관 및 위탁처리 * 폐합성수지(가연성),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바닥 청소 MD 분리 불가능한 폐기물에 한함) - 지정폐기물 별도 보관소 운영 및 전문업체 위탁처리 * 폐유, 폐페인트, 폐유기용제(방수제)등 위탁계약 및 신고하여 처리	
4	환경민원 관리	- 현장 주변 환경민원 예상 가옥,상가 등LIST관리 - 환경민원보상 예상금액 산정 - 주요 환경민원 대상별 대응전략 수립 - 주요 환경민원 대상별 소음진동 자가측정 실시 및 기록유지 - 환경민원 의사소통 관리대장 작성 관리	
5	공종별 환경관리시설 운영	- 환경시설별 전담관리자 지정 운영세륜시설, 고압살수기, 폐기물 분리 보관소 등) - 실기 및 내리기 : 토사 등 상하차 작업시 고압살수기시설 등 살수작업 실시 - 야적 : 토사등 분체상 물질 1일 이상 보관시 방진덮개설치 - 수송 : 세륜시설 및 살수차 운영(고장시 대체시설 운영 및 시설기준 변경신고) - 연마 : 벽체 면갈이 작업 등 비산먼지 발생시 집진시설 또는 방진망 설치 - 소음발생작업 : 토공시 이동식 방음벽 설치,골조시 알폼해체 소음 저감활동 등	

	환경경영시스템	문서번호	HW-EP-811
		개정일자	2023.08.01
	환경운영관리 규정	개정번호	0
		쪽 번호	7 / 33

NO	항 목	관 리 P O I N T	비 고
6	법규 준수평가	- 주간 자체환경점검을 통해 법규 준수여부 확인 및 공정회의시 협력사 공유 - 점검 지적사항 조치여부 확인(조치계획,조치이행 결과보고 등-사진대지 자료)	
7	환경관리협의회	- 월간 공정회의시 주요 환경관련 문제점 및 관리계획에 대해 협력사와 협의 및 기록관리	
8	환경교육	- 직원,협력사,근로자 매월 정기 환경교육 실시 * 연간교육 일정,교육대상,내용 및 방법(주요 환경관리사항 교육) * 교육 후 결과보고(참석명단,교육사진 등)	
9	환경관리비	- 환경시설별 소요예산 투자계획 수립 및 실적 관리	
10	환경시설 폐쇄	- 지하수 폐공, 정화조 철거 등 관련 신고 실시 - 세륜시설 기초 등 환경 가시설 철거	

	환경경영시스템	문서번호	HW-EP-811
		개정일자	2023.08.01
	환경운영관리 규정	개정번호	0
		쪽 번호	8 / 33

2) 환경담당자 필수 업무

이행 시기	관련내용	세부업무내용	참고항목
착공전	대관 인, 허가	- 폐기물, 비산먼지, 특정공사, 하수, 지하수, 비점오염원, 환경영향평가등 관련신고	
	환경관리계획서 작성	- 오염원별 환경관리 방안, 현장 환경경영 운영방안등을 반영한 환경관리 계획서 작성	
	방음벽 설치	- 3m 이상, 흡음효과 7dB이상 방음벽 설치	
	폐기물처리 위탁계약	- 현장설명회를 통해 경쟁 입찰후 최저가 업체 선정 및 품의 * 대상: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 폐합성수지 * 단가계약(원/㎡)원칙 - 배출자/운반자/처리자 3자계약	
	비점오염저감 시설 설치	- 저류시설, 인공습지등 설치	
	환경관련 법규파악	- 현장 환경업무와 관련된 환경법규 및 그 밖의 요구 사항 파악 및 관리 (지자체 환경조례파악 포함)	
	환경목표 수립	- 전 공정에 대한 환경 측면파악 및 영향평가를 통하여 환경목표 및 실행방안 수립	
	환경업무 수행자에 대한 자격부여	- 환경관리자, 점검요원, 측정요원지정 - 실행방안별 담당자 지정(조직도 및 업무분장에 반영)	
	비상사태대비 훈련계획수립	- 환경 측면 파악결과 도출된 비상사태에 대한 훈련 계획 수립	
	교육훈련 계획수립	- 연간 환경 교육계획표 작성 - 교육내용 : 환경방침, 환경법규, 환경경영 추진계획, 환경경영 검토보고서, MSDS 등	

	환경경영시스템	문서번호	HW-EP-811
		개정일자	2023.08.01
	환경운영관리 규정	개정번호	0
		쪽 번호	9 / 33

이행 시기	관련내용	세부업무내용	참고항목
시설 설치시	정화조/오수 처리시설 설치	- 정화조/오수처리 시설 설계·시공업체가 시공 (단, 기성제품은 제외) - 준공후 관할 관청에 준공검사 신청서 제출	
	지하수 개발	- 지하수 개발,이용시 공면허 보유업체가 시공 - 지하수 사용 종료후 원상복구를 담보하기 위해 이행 보증금 예치 - 준공후 관할 관청에 7일 이내 준공신고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	
	대기배출 시설 설치	- 대기배출 시설 설치신고 -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방지시설업 등록을 한자가 설계,시공)	
	폐수배출 시설 설치	- 폐수배출 시설설치 신고 -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치(방지시설업 등록을 한자가 설계·시공) - 오염물질측정 기기부착(자가측정 의무규정 없음) -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사업장 사입대상시 환경 책임보험 가입	
	폐기물인계서 작성	- 폐기물위탁/처리시 마다 작성(차량당 작성)	
	폐기물관리 대장 작성	- 폐기물 배출 일별 발생량,처리량 등 기록 - 폐기물 인계서와 일치 하도록 작성	

	환경경영시스템	문서번호	HW-EP-811
		개정일자	2023.08.01
	환경운영관리 규정	개정번호	0
		쪽 번호	10 / 33

이행 시기	관련내용	세부업무내용	참고항목
공사중	폐기물분리 보관소 설치	- 종류별 보관소 지정 - 분리보관 표지판 설치	
	폐기물처리시설 관련일지 작성	-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관리대장 작성 - 순환골재 생산, 판매대장 작성	
	지장물철거시 석면조사	- 기존 가옥 등 지장물 철거시 석면 함유여부 조사 - 철거시 석면 해체, 제거업자를 통한 해체	
	소음자체 측정	- 등가 소음 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 - 측정위치, 측정값 등을 소음 측정 일지에 기록	
	이동식 방음벽 설치	- 소음발생 장비 및 작업구간에 이동식 방음벽 설치	
	정화조/오수 처리시설 정상가동	- 년1회 이상 내부청소 - 방류수의 주기적 측정(수질기준 만족 여부확인) ※전문관리 업체를 선정하여 관리 및 방류수 측정위탁 ☞위탁관리중 기준 초과는 관리업체 책임	
	지하수 수질검사	- 양수량 30톤/일 이상 : 음용수 2년마다 - 양수량 30톤/일 미만 : 음용수 3년마다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일지작성	- 가동시간, 폐수배출량,약품 투입량 등을 기록	
	비점오염저감 시설 관리	- 관리담당자 지정 - 강우 전후 시설정비 - 비점오염 저감 시설관리·운영대장 등 기록	

	환경경영시스템	문서번호	HW-EP-811
		개정일자	2023.08.01
	환경운영관리 규정	개정번호	0
		쪽 번호	11 / 33

이행 시기	관련내용	세부업무내용	참고항목
공사중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행	- 협의내용 이행 - 협의내용 관리대장 작성 및 비치	
	교육실시	-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 실시 후 기록유지	
	비상사태대비 훈련실시	- 년1회 이상 비상사태 대비 훈련실시 - 훈련결과 보고서 작성	
	환경목표 실행방안 이행	- 상/하반기 환경경영 추진 결과 보고서 작성	
	회의실시 및 기록유지	- 협력업체와 환경관리 협의회 구성 - 월1회 이상 회의실시 및 회의록 기록유지	
	자체점검	- 주1회 이상 자체점검 실시 및 기록유지 - 점검결과 부적합 사항에 대한 부적합 보고서 발행 및 FEED BACK근거유지	
	환경관리비관 리	- 매월 환경관리비 사용현황 집계 및 관리	
준공시	폐쇄 및 종료신고	- 정화조/오수 처리시설, 지하수등 가시설물 폐쇄신 고 - 환경영향 평가대상 사업준공 통보	
	실적보고	- 폐기물 처리실적 보고 이행 - 폐기물 처분 부담금 신고 이행 -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 이행	
	가시설 철거	- 정화조/오수처리시설, 세륜기, 방음벽등 철거 - 지하수 원상복구 - 현장 사무실 철거시 석면조사 실시	
	보존문서 이관	- 준공시 반납서류 목록 확인하여 지정위치로 이동 - 준공시 반납 확인서를 본사 관련팀 제출하여 확인	

	환경경영시스템	문서번호	HW-EP-811
		개정일자	2023.08.01
	환경운영관리 규정	개정번호	0
		쪽 번호	12 / 33

5.6. 대관 인·허가

1) 관련법규

구 분	법규명	비 고
대기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대기법’ 이라한다.
폐기물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이하 ‘건 폐법’ 이라한다.
	폐기물관리법	이하 ‘폐기물법’ 이라한다.
	자원순환기본법	이하 ‘자순법’ 이라한다.
소음 · 진동	소음 · 진동관리법	이하 ‘소음법’ 이라한다.
수질	물환경보전법	이하 ‘물환경법’ 이라한다.
	지하수법	
	하수도법	
	하천법	
기타	환경영향평가법	이하 ‘영향평가법’ 이라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이하 ‘화관법’ 이라한다.
	토양환경보전법	이하 ‘토양법’ 이라한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이하 ‘잔류물법’ 이라한다.

	환경경영시스템	문서번호	HW-EP-811
		개정일자	2023.08.01
	환경운영관리 규정	개정번호	0
		쪽 번호	13 / 33

종류		대 상	이행시기	관련 법규
비 산 면 지	신 고	• 구조물 축조: 연면적 1,000㎡ 이상(가설건물축조포함) • 토목: 구조물 용적 합계 1,000㎡ 이상, 공사면적 1,000㎡ 이상 또는 총연장 200m 이상 • 굴정: 총연장 200m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 200㎡ 이상 • 조경: 면적합계 5,000㎡ 이상 • 건축물 해체: 연면적 3,000㎡ 이상 • 토공사/정지공사: 공사면적 합계 1,000㎡ 이상 • 상기공사에 준하는 기타공사 ※가설 사무실 축조시 상기 공사 규모에 해당되면 별도로 신고함.	착공전	대기법 제43조
	변 경 신 고	• 비산먼지 배출공정 변경 • 사업규모 확대 또는 종류 추가 •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조치사항 변경	변경전	
		• 공사기간 연장	이전 신고서에 변경된 공사기간 종료전	
		• 사업장 명칭 또는 대표자 변경		
특 정 공 사	신 고	<생활 소음진동 규제지역내 특정공사 해당장비를 5일이 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다음 규모에 해당시> • 토목: 구조물 용적합계1,000㎡ 이상 또는 면적합계 1,000㎡ 이상 • 건축물 축조: 연면적 1,000㎡ 이상 • 건축물 해체: 연면적 3,000㎡ 이상 • 토공사/정지공사: 공사면적 합계1,000㎡ 이상 • 굴정: 총연장200m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200㎡ 이상 • ※ 해당 공사규모 미만 일지라도 병원,도서관,주거지 역 500m 이내에 위치한 경우는 신고대상 ※특정 공사해당 장비:항타기,항발기,항타항발기 (압입 식제외),천공기, 공기압축기 (공기토출량이2.83㎡/분 이 상의 이동식에 한함),브레이커(휴대용 포함),굴삭기,로 더,발전기,압쇄기,다짐기계,콘크리트 절단기, 콘크리트 펌프	착공전	소음법 제22조

	환경경영시스템	문서번호	HW-EP-811
		개정일자	2023.08.01
	환경운영관리 규정	개정번호	0
		쪽 번호	14 / 33

종류		대 상	이행시기	관련 법규
특 정 공 사	변 경 신 고	• 특정공사 대상기계·장비 30% 이상증가 • 방음/방진시설 설치명세 변경 • 소음·진동 저감대책 변경 • 공사규모 10% 이상 확대	변경전	소음법 제22조
		• 공사기간 연장	이전 신고일 전까지	
건 설 폐 기 물	신 고	• 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 건설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5 톤 이상의 임목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에 해당)	착공전	건폐법 제17조
	변 경 신 고	• 폐기물 총량 50%이상 증가 • 새로운 종류의 폐기물 5톤이상 배출 • 폐기물 처리방법, 운반자, 처리자 변경 • 공사기간 3개월 이상 연장	해당폐기물 처리전	
	처 리 실 적 보 고	• 건설폐기물 신고한 현장	매년2월말 (준공후 15일이내)	건폐법 제34조
	재 활 용 실 적 보 고	• 현장내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자체 재활용한 현장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 의무사용 대상현장	준공검사전	
사 업 장 폐 기 물	신 고	• 공사로 인하여 착공부터 준공까지 5톤 이상 사업장 폐기물 배출	착공전	폐기물 법 제17조
		• B/P운영으로 일평균 100kg 이상 사업장 폐기물 배출	사업개시일/폐 기물배출 1개월이내	
	변 경 신 고	• 종류별 월평균 배출량(전년도 1년간 기준) 50%이상 증가(공사 폐기물의 경우 총량대비 50%이상 증가) • 새로운 종류의 폐기물이 100kg/일 이상 배출(공사 폐 기물의 경우 5톤 이상) • 폐기물 처리 방법 변경	해당폐기물 처리전	
		• 공사기간 3개월 이상 연장	사유발생 1개월이내	폐기물 법 제38조
	처 리 실 적 보 고	• 사업장 폐기물 신고한 현장	매년2월말(준공시최종 배출일15일 이내)	

	환경경영시스템	문서번호	HW-EP-811
		개정일자	2023.08.01
	환경운영관리 규정	개정번호	0
		쪽 번호	15 / 33

종류		대 상	이행시기	관련 법규
지정 폐기물	신고	- 폐유 또는 폐유기용제를 각각 월평균 50kg이상 또는 합계 월평균 130kg이상 배출 - 폐페인트, 페라커, 폐석면을 각각 월평균 100kg이상 또는 합계 월평균 200kg이상 배출 - 폐석면을 월평균 20kg이상 배출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을 배출 - 폐유독물질, 의료폐기물, 수은폐기물, 천연방사성 제 품폐기물 배출	처리전	폐기물 법 제17조
	변경 신고	- 월평균 배출량(전년도 1년간 기준) 10%이상 증가 - 새로운 종류의 지정폐기물 발생 - 종류별 처분 또는 재활용 방법, 처리자 변경 -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 변경	사유발생30일 이내(처리전)	
	처리 실적 보고	지정폐기물 신고한 현장	매년2월말(준공시최종배출일15일 이내)	폐기물 법 제38조
폐기물처분 부담금 신고		건설/사업장/지정폐기물 중 소각 또는 매립처분 발생 현장	매년3월말(준공후30일 이내)	자순법 제21조
건설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 승인	건설 폐기물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여 재활용 시	설치전	건폐법 제27조
	설치 신고	- 바닥면적이 330㎡미만의 자연식 탈수·건조시설을 직접 - 설치·운영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 시		
	변경 승인 / 변경 신고	- 처리대상 폐기물 종류변경 - 처리 시설 소재지 변경 - 처리용량 30%이상 변경 - 주요설비 변경 - 상호변경 - 주요설비의 변경(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 신고대상이 되는 경우와 습식 파쇄·분쇄 시설로의 구조변경이 있는 경우로 한정 한다.)	변경전	건폐법 제27조

	환경경영시스템	문서번호	HW-EP-811
		개정일자	2023.08.01
	환경운영관리 규정	개정번호	0
		쪽 번호	16 / 33

종류		대 상	이행시기	관련 법규
건설 폐기물 처리 시설	사용 개시 신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후 사용 예정	사용개시 20일전 (행정기관에 서 통보 받음)	건 폐법 제28조
	폐쇄 신고	폐기물 처리시설 사용 종료 및 폐쇄예정	폐쇄 예정일 1개월이전	폐기 물법 제50조
지하수	허가	양수능력 100톤/일 초과 지하수 개발 외	개발전	지하 수법 제7조
	변경 허가	- 지하수 용도변경 - 지하수 시설변경 (양수능력이 증가되는 경우만 해당)	변경전	
	신고	양수능력 100톤/일 이하 지하수 개발 외	개발전	지하 수법 제8조
	변경 신고	- 지하수 용도변경 - 지하수 시설변경	사유발생 후1개월 이내	
	준공 신고	지하수 이용시설 공사준공	준공후 1개월이내	지하 수법 제9조
	종료 신고	- 굴착한 장소에 지하수 미채취 - 수질 불량으로 개발·이용 종료	원상 복구전	지하 수법 제9조의 3
굴착 행위	신고	지하수 영향조사, 지하수 오염 유발 시설의 오염관 측정을 통한 수질 측정, 굴착지름 75mm이상인 지질·지하수 조사, 지열 냉난방 시설의 공사로서 지하수를 뽑아 쓰지 아니하는 공사 등	굴착전	지하 수법 제9조의 4
	변경 신고	- 굴착깊이 또는 굴착지름 변경 - 시공 업체명 변경	변경전	
	종료 신고	굴착 행위의 종료	원상 복구전	
정화 조/ 오수 처리 시설	신고	- 정화조 신고: 하수처리 구역내 현장에서 수세식 화장실 설치, 하수 처리구역외 현장에서 오수를 2㎥/일 이하 배출 - 오수처리 시설신고: 하수처리 구역외 현장에서 오수를 2㎥/일 초과 배출	시설 설치전	하수도 법 제34조

	환경경영시스템	문서번호	HW-EP-811
		개정일자	2023.08.01
	환경운영관리 규정	개정번호	0
		쪽 번호	17 / 33

종류		대 상	이행시기	관련 법규
정화 조/ 오수 처리 시설	변 경 신 고	• 시설규모 변경 • 시설구조 변경 • 처리용량 변경 • 시설본체 변경	변경전	하수도 법 제34조
	폐 쇄 신 고	• 오수처리시설/정화조 폐쇄예정	폐쇄전	
폐수 배수 시설	신 고	• 콘크리트 접촉등으로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폐수 발생량이 1㎥/Hr 이상(터널공사 등) • 면적 100㎡ 이상 시험실(실험폐수를 오수처리 시설등으로유입, 처리하는 경우 제외)이 1일 최대 폐수배출량이 0.1㎥ 이상 • 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시설(수증기 양생 공정만 있는 경우 제외)이 최대 폐수배출량이 0.1㎥ 이상	설치전	물환경 법 제33조
	변 경 신 고	• 폐수 배출량 증감으로 사업장 종변경 • 폐수 배출량 50%이상 증가 • 새로운 오염물질 배출 • 폐수처리 방법 및 처리공정 변경 •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배출시설에 방지시설 설치 • 배출 및 방지시설 전부 또는 일부 폐쇄	변경전	
		• 허가 및 신고된 사항 변경 • 사업장 대표자 변경 • 사업장 명칭 변경 • 사업장 소재지 변경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임대 • 폐수 위탁자 변경	변경후 30일 이내	
	가 동 시 작 신 고	• 폐수 배출시설 설치 후 사용예정	사용전	물환경 법 제37조

	환경경영시스템	문서번호	HW-EP-811
		개정일자	2023.08.01
	환경운영관리 규정	개정번호	0
		쪽 번호	18 / 33

종류		대 상	이행시기	관련 법규
대기배출시설	신고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시설: 용적3㎥이상의 혼합시설(습식제이)또는 입자상 물질계량시설 - 입자상 물질 및 가스상 물질 발생시설: 용적50㎥이상 고체 입자상 물질저장 시설, 동력20HP이상 분쇄시설(습식, 이동식제외)용적5㎥이상인 건조시설(도포시설, 도장시설 및 분리시설 포함)	설치전	대기 법 제23 조
	변경 신고	- 배출 및 방지시설 증설·교체 또는 폐쇄 - 사용원료 또는 연료변경 - 신고필증에 기재된 신고사항 및 일일 조업시간 변경	변경전	
		- 사업장 명칭 변경 - 대표자 변경 - 배출 및 방지시설 임대	사유발생 후 30일 이내	
	가동 개시 신고	대기 배출시설 설치 후 사용 예정	사용전	대기 법 제30 조
	가동 개시 일 변경 신고	가동 개시일 변경	최초신고된 가동개시일 전	
특정 토양 오염 관리 대상 시설	신고	-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등 제조·저장 및 취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총용량 2만 ℓ 이상인 저장시설 -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 유독물 제조업, 판매업, 취급업의 허가를 받은자가 설치한 저장시설중 토양 오염 물질저장시설 ※토양 오염물질: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아연, 니켈, 불소 및 그 화합물, 6가크롬 화합물, 유기인 화합물, PCB, 페놀류, 벤젠, 시안 화합물,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 총탄화수소, 트리클로로 에틸렌, 테트라클로로 에틸렌, 벤조(a)피렌	설치전	토양 법 제12 조
	변경 신고	-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 변경 -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	사유발생 30일 이내	

	환경경영시스템	문서번호	HW-EP-811
		개정일자	2023.08.01
	환경운영관리 규정	개정번호	0
		쪽 번호	19 / 33

종류		대 상	이행시기	관련 법규
PCBs 함유 기기 설치	신고	유입식 변압기, 유입식 컨덴서, 유입식 계기용 변압 변류기, 유입식 안정기, 유입식 개폐기/차단기, 유입식 방전코일 등	설치후 30일 이내	잔유물 법제24 조의2
	변경 신고	- 기기의 폐기 - 절연유 교체(PCBs를 2ppm이상 함유 절연유만 해당)	사유발생후 30일 이내	
환경영 향 평 가	관리 책임 자 지정 통보	환경영향 평가대상 현장의 환경영향 평가협의 내용 관리책임자	공사시작후 20일 이내	영향 평가법 제35조
	착 공 통 보	환경영향 평가대상 사업착공 예정	사유발생후 20일 이내	영향 평가법 제37조
	공 사 중 지 통 보	3개월 이상 공사중지		
	준 공 통 보	공사준공		
비점 오염 원 설치	신고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	승인및사업 계획확정후 30일 이내	물환경 법제53 조
	변경 신고	- 총사업 면적 또는 개발면적 또는 사업장 부지 면적이 처음 신고 면적의 15%이상증가 - 저감시설의 종류, 위치, 용량변경 - 비점오염원 또는 저감시설 전부 또는 일부폐쇄(완료에 따른 폐쇄는 제외)	변경승인후 (변경승인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변경사실 발생후) 15일 이내	
		- 상호, 대표자, 사업명 또는 업종변경	변경후 30일 이내	
하천 수사 용	허 가	하천수를 취수하여 특정용도(살수차, 공사용수등)로 사용하고자 하는자	사용전	하천법 제50조
	변경 허가	- 하천수의 사용목적 변경 - 하천수의 사용기간 변경 - 하천수의 취수지점 및 취수시설 변경	변경전	

	환경경영시스템	문서번호	HW-EP-811
		개정일자	2023.08.01
	환경운영관리 규정	개정번호	0
		쪽 번호	20 / 33

종류		대 상	이행시기	관련 법규
하천 수사 용	변 경 허 가	- 취수허가 사용량 변경 - 허가시 별도로 불인사항 변경	변경전	하천법 제50조
유 해 화 학 물 질 사 용	영 업 허 가	유해화학물질을 사용 하려는 자(황산: 연100kg이상 사용시), 황산10%이상 함유한 혼합물사용시	사용전	화관법 제27-28 조
	변 경 허 가	- 연간 사용량 50% 이상 증가시 - 허가 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 추가시 - 장외영향 평가서의 작성항목 중 장외평가 정보가 변경된 경우(변경후 화학사고 발생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 사업장의 소재지(사무실만 있는 경우는 제외)변경시	변경전	
	변 경 신 고	- 사업장의 명칭·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장외영향 평가서의 작성항목 중 장외 평가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후 화학사고 발생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확대되지 아니하는 경우)	변경된 날부터30일 이내	
	휴 업 폐 업 신 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휴업·폐업시	예정일 10일전	화관법 제34조
	관 리 자 선 임 해 임 신 고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시	사업개시전	화관법 제32조
		유해화학물질관리자 해임, 퇴직시	해임또는 퇴직한 날부터30일 이내	

	환경경영시스템	문서번호	HW-EP-811
		개정일자	2023.08.01
	환경운영관리 규정	개정번호	0
		쪽 번호	21 / 33

5.7. 공종별 환경관리

공종	세부 공종	환경영향	중점환경관리사항
	철거	건설/사업장폐기물, 비산먼지,소음진동	• 비산먼지, 특정공사, 건설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폐기물 처리시설 신고 • 폐기물분리 보관 • 폐석면 해체 및 처리 • 철거작업 구간 살수 실시 • 공사장 주변방음/방진벽 설치
기초공	말뚝/파일	장비소음, 항타소음진동, 건설폐기물	• 장비용 이동식 방음벽 설치 • 저소음 장비선택 • 저소음/저진동 공법선정 • 폐기물 분리보관
토공	절토/성토/터파기	장비소음,비산먼지, 건설폐기물,오타수, 오염토	• 장비용 이동식 방음벽 설치 • 방진덮개 설치 • 세륜시설 설치 • 실키 및 내리기 공정시 살수 • 민원을 고려하여 차량이동 통로 선정 • 운반시 규정속도 준수 • 살수차 운영 • 오염의심 토사 성분분석 • 간이침사지/가배수로 설치
	천공/발파	발파소음진동, 비산먼지	• 저진동 발파공법 선정 • 시험발파를 통한 적정 화약량 계산 • 비산먼지 발생부위 살수 • 작업시간 조정 • 저소음·저진동 장비사용(토네이도 비트,트리콘 비트 등) • 작업구간 방음벽 추가 설치
	굴조	건설폐기물, 소음진동, 비산먼지	• 폐기물 분리보관 • 콘크리트 펌프카등 공회전금지

	환경경영시스템	문서번호	HW-EP-811
		개정일자	2023.08.01
	환경운영관리 규정	개정번호	0
		쪽 번호	22 / 33

공종	세부 공종	환경영향	중점환경관리사항
	골조	건설폐기물, 소음진동, 비산먼지	- 외부 방진망 설치 - 내부 청소 실시
	골조	수질오염, 페인트 분사물	- 오탁방지막/오일펜스 설치 - 유화제/흡착포 비치
	터널	암버력,오탁수, 건설/사업장폐기 물	- 폐기물, 폐수배출 시설신고 - 폐기물 분리보관 - 샷크리트 분리수거 철지(폐기물처리) - 폐수처리 시설설치
	B/P	싸이로 비산먼지, 폐수,사업장폐기 물	- 비산먼지, 사업장폐기물, 대기배출시설, 폐수배출 시설신고 - 대기 및 수질오염 방지시설 운영, 운영일지 작성 - 방류수 자가측정 - 폐기물 분리보관
	C/P	비산먼지,소음진 동	- 콘베이어 벨트에 밀폐형 방진막 설치 - 낙하부위 살수시설 설치 - 이동식 방음벽 설치
	항만	수질오염	- 오탁방지막/오일펜스 설치 - 유화제/흡착포 비치
	포장	건설폐기물, 소음진동	- 소음 민감 지역 방음시설 설치 - 폐기물 분리보관
	마감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페인트 분사물	- 지정폐기물 신고 - 폐기물 분리보관 - 분진망 설치

	환경경영시스템	문서번호	HW-EP-811
		개정일자	2023.08.01
	환경운영관리 규정	개정번호	0
		쪽 번호	23 / 33

5.8. 환경법규별 벌칙 기준

위반내용		벌 칙	
■ 대기			
•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세륜시설, 방진막, 방진덮개등)		300만원이하 벌금	
•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필요조치 명령 • 위반		300만원이하 벌금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이행		300만원이하 벌금	
•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		100만원이하 과태료	
배출 시설	• 설치허가 미취득(허위취득)	1억원이하 벌금	
	• 방지시설 미설치, 비정상 가동	1억원이하 벌금	
	• 설치신고 미이행, 허위신고	3,000만원이하 벌금	
	• 가동 개시신고 미이행	1,000만원이하 벌금	
	• 환경기술인 임명신고 미이행	300만원이하 과태료	
	• 가가측정 미이행, 측정기록부 보관 미흡/허위기록	500만원이하 과태료	
	• 운영기록부 허위기재, 보관미흡	300만원이하 과태료	
■ 폐기물		건설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신고	• 폐기물 배출자신고 미이행, 허위 신고	1,000만원이하 과태료	
	• 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미이행, 허위신고	300만원이하 과태료	
	• 지정폐기물 처리·변경 계획서 제출 미이행, 신고내용과 다르게 처리	-	2,000만원이하 벌금

	환경경영시스템	문서번호	HW-EP-811
		개정일자	2023.08.01
	환경운영관리 규정	개정번호	0
		쪽 번호	24 / 33

위반내용		벌칙	
처리 기준	• 폐기물 투기, 불법매립, 불법소각	-	7,000만원이하 벌금
	• 폐기물 자가처리 또는 적법업체 위탁처리위반	3,000만원이하 벌금	
	• 폐기물 수집운반, 보관, 처리규정 위반(주변환경오염)	3,000만원이하 벌금	2,000만원이하 벌금
	• 폐기물 수집운반, 보관, 처리규정 위반(주변환경오염 없음)	1,000만원이하 과태료	2,000만원이하 벌금
위탁 처리 계약	• 폐기물 위탁·수탁 계약 미체결	1,000만원이하 과태료	-
	• 폐기물 처리 3자계약 미이행	1,000만원이하 과태료	-
	• 폐기물 위탁업체 수탁처리 능력 미확인	300만원이하 과태료	
기록 관리	• 폐기물 인계서 미입력, 허위입력, 입력 내용 일부누락, 입력방법 미준수	100만원이하 과태료	2,000만원이하 벌금
	• 폐기물 인계서 입력기한초과 /부실하게입력	-	100만원이하 과태료
	• 폐기물 관리대장 미작성, 허위작성, 미비치	100만원이하 과태료	
실적 보고	•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 미이행 또는 허위보고	100만원이하 과태료	
	•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 미이행 또는 허위보고(지정폐기물에 한함)	-	300만원이하 과태료
	•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 미이행 또는 허위보고	300만원이하 과태료	-
	• 폐기물 처분부담금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100만원이하 과태료	
폐기 물 처리 시설	• 설치승인 미이행	3,000만원이하 벌금	
	• 변경승인 미이행	1,000만원이하 과태료	2,000만원이하 벌금

	환경경영시스템	문서번호	HW-EP-811
		개정일자	2023.08.01
	환경운영관리 규정	개정번호	0
		쪽 번호	25 / 33

위반내용		벌 칙	
폐기물 처리 시설	• 설치신고 미이행	2,000만원이하 벌금	
	• 변경신고 미이행	300만원이하 과태료	-
	• 설치검사 미이행	-	3,000만원이하 벌금
	• 해당 건설공사 현장외의 장소에서 재활용	1,000만원이하 과태료	-
	• 관리기준 위반(주변환경오염)	1,000만원이하 과태료	2,000만원이하 벌금
	• 관리기준 위반(주변환경오염 없음)	-	1,000만원이하 과태료
	• 사용 개시신고 미이행	100만원이하 과태료	
	• 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허위작성, 보관미흡	100만원이하 과태료	
	• 순환골재 생산·판매대장 미작성, 허위작성, 보관미흡	100만원이하 과태료	-
	• 사용종료·폐쇄신고 미이행	-	100만원이하 과태료
순환골재 의무 사용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미사용(순환골재의무사용 건설공사 발주자 처벌)	1,000만원이하 과태료	-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발주자	300만원이하 과태료	-
기타	• 폐기물 분리발주 미이행(발주자 처벌)	1,000만원이하 과태료	-
■소음·진동			
• 사용금지,공사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		1,000만원이하 벌금	
• 작업시간 조정등 명령위반		500만원이하 벌금	

	환경경영시스템	문서번호	HW-EP-811
		개정일자	2023.08.01
	환경운영관리 규정	개정번호	0
		쪽 번호	26 / 33

위반내용	벌 칙
• 특정공사 사전신고/변경신고 미이행, 허위 신고	200만원이하 과태료
• 방음시설 미설치, 기준미달 방음시설 설치	200만원이하 과태료
• 소음진동 저감대책 미수립, 미시행	200만원이하 과태료
• 소음진동 규제기준 초과	200만원이하 과태료
• 소음진동 규제기준 초과4회이상(1년이내)	200만원이하 과태료+소음진동 발생행위 중지
■ 지하수	
•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미이행	3,000만원이하 벌금
•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위반	3,000만원이하 벌금
• 지하수 보전구역내 불법행위	3,000만원이하 벌금
• 지하수 오염방지 조치 미이행	2,000만원이하 벌금
•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미이행	1,000만원이하 벌금
•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 폐쇄명령 미이행	1,000만원이하 벌금
• 유출지하수 저감대책 또는 이용계획을 미수립 • 미시행	1,000만원이하 벌금
• 지하수 개발·이용/굴착행위 신고 미이행, 허위신고	500만원이하 과태료
• 원상복구 불이행, 원상복구 명령 불이행	500만원이하 과태료

	환경경영시스템	문서번호	HW-EP-811
		개정일자	2023.08.01
	환경운영관리 규정	개정번호	0
		쪽 번호	27 / 33

위반내용	벌 칙
• 이행보증금 예치 미이행	500만원이하 과태료
• 지하수 개발·이용/굴착행위 종료신고 미이행	500만원이하 과태료
• 수질검사 미이행	500만원이하 과태료
• 지하수 개발·이용변경신고 미이행	300만원이하 과태료
• 준공신고 미이행	300만원이하 과태료
• 수질검사 결과 미비치	300만원이하 과태료
■하수	
• 개인하수 처리시설 미설치	2,000만원이하 벌금
• 개인하수 처리시설 부적정 운영 및 개선 명령 불이행	1,000만원이하 벌금
• 준공검사후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개선 명령 위반	1,000만원이하 벌금
• 개인하수 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설치 및 운영·관리기준 미준수에 따른 개선명령 위반	1,000만원이하 벌금
• 개인하수 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500만원이하 과태료
• 개인하수 처리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폐쇄 신고 미이행	100만원이하 과태료
• 개인하수 처리시설 설치를 무허가 설계·시공업자에게 위탁	100만원이하 과태료
• 개인 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 미이행	100만원이하 과태료

	환경경영시스템	문서번호	HW-EP-811
		개정일자	2023.08.01
	환경운영관리 규정	개정번호	0
		쪽 번호	28 / 33

위반내용	벌 칙
• 개인하수 처리시설 유지·관리기준 위반	100만원이하 과태료
• 개인하수 처리시설 폐쇄기준 위반	100만원이하 과태료
■토양	
• 오염토양 투기, 매립	2,000만원이하 벌금
• 토양정화 조치명령 불이행	2,000만원이하 벌금
• 오염토양 정화기준 및 방법 미준수	1,000만원이하 벌금
• 오염토양에 다른 토양을 섞어 오염 농도 희석	1,000만원이하 벌금
• 보관·운반·정화 등의 과정에서 오염토양을 누출·유출하는 행위	1,000만원이하 벌금
• 신고 정화지외의 장소로 반출	1,000만원이하 과태료
• 오염토양 정화계획 또는 오염토양 정화 변경 계획 미제출자	200만원이하 벌금
• 토양관련 전문기관에 정화검증 미이행	1,000만원이하 벌금
• 토양관련 전문기관에 정화검증 미완료 상태에서 오염토양 반출	1,000만원이하 과태료
• 토양 인수인계서 미작성	300만원이하 과태료
• 토양 인수인계서 허위, 부실 작성	200만원이하 과태료
• 오염토양 반출정화 계획 적정통보 전 오염토양 반출	200만원이하 과태료

	환경경영시스템	문서번호	HW-EP-811
		개정일자	2023.08.01
	환경운영관리 규정	개정번호	0
		쪽 번호	29 / 33

위반내용		벌칙
특정 토양 오염 관리 대상 시설	• 설치신고 미이행, 허위신고	1,000만원이하 벌금
	• 시설변경(시설의 변경 폐쇄를 포함) 신고 미이행	200만원이하 과태료
	• 시설 사용 중지명령 불이행	2,000만원이하 벌금
	• 토양오염 방지시설 유지·관리기준 미준수	1,000만원이하 벌금
	• 토양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에 관한 명령 미이행	1,000만원이하 벌금
■수질		
• 공공수역내 특정 수질 유해물질 등 누출·유출		3,000만원이하 벌금
• 공공수역내 다량의 토사유출		1,000만원이하 과태료
• 하천수 사용허가 미이행		2,000만원이하 벌금
배출 시설	• 설치허가 미이행	7,000만원이하 벌금
	• 설치신고 미이행	5,000만원이하 벌금
	• 비정상 가동	5,000만원이하 벌금
	• 오염물질 측정기기 미부착	5,000만원이하 벌금
	• 오염물질 측정기기 중 적선편력계 또는 적산유량계 미부착	100만원이하 벌금
	• 가동 시작신고 미이행	1,000만원이하 벌금
	• 환경기술인 미임명	1,000만원이하 과태료

	환경경영시스템	문서번호	HW-EP-811
		개정일자	2023.08.01
	환경운영관리 규정	개정번호	0
		쪽 번호	30 / 33

위반내용		벌 칙
배출 시설	• 측정기기운영 · 관리기준 미준수	300만원이하 과태료
	• 운영기록부 허위작성, 보관미흡	300만원이하 과태료
	• 변경신고 미이행	100만원이하 과태료
비점 오염 원	• 설치신고 미이행	1,000만원이하 과태료
	• 비점오염 저감시설 미설치	1,000만원이하 벌금
	• 비점오염 저감시설설치 개선명령 위반	1,000만원이하 벌금
	• 변경신고 미이행	300만원이하 과태료
■환경영향평가		
• 협의내용 불성실 이행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 위반		5,000만원이하 벌금
• 협의내용 불성실 이행에 따른 조치명령 미이행		2,000만원이하 과태료
• 협의 · 재협의 절차를 끝내지 아니하고 공사시행		1,000만원이하 벌금
• 협의내용 관리대장 미작성 및 미비치		500만원이하 과태료
•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 미통보		500만원이하 과태료
•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미지정 및 미통보		500만원이하 과태료
• 사업착공, 공사중지(3개월이상), 준공 미통보		500만원이하 과태료
■PCBs 함유기기		
• 관리 대상기기등 신고/변경신고 미이행		1,000만원이하 과태료

	환경경영시스템	문서번호	HW-EP-811
		개정일자	2023.08.01
	환경운영관리 규정	개정번호	0
		쪽 번호	31 / 33

위반내용	벌 칙
■환경분쟁	
• 조정·재정위원/심사관출입·조사·열람 ·복사기피, 방해	200만원이하 벌금
• 출석요구불응, 문서미제출	100만원이하 과태료
• 사건과 관계있는 문서 또는 물건 미제출, 허위 제출	100만원이하 과태료
■환경관리비	
• 미계상 (발주자 처벌)	1,000만원이하 과태료
• 목적외 사용 (사용자 처벌)	1,000만원이하 과태료
■석면	
• 석면 배출허용 기준 초과로 인한 작업중지 명령 위반	2,000만원이하 벌금
• 석면 해체작업 감리인 미지정	1,000만원이하 벌금
• 석면 해체작업 감리인이 석면 배출허용 기준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내린 조치 미이행	1,000만원이하 벌금
• 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작업중지 명령 미이행	1,000만원이하 벌금
• 석면 농도 미측정	500만원이하 과태료
•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주변의 석면 농도 측정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00만원이하 과태료
■화학물질	
•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	2억원이하 벌금

	환경경영시스템	문서번호	HW-EP-811
		개정일자	2023.08.01
	환경운영관리 규정	개정번호	0
		쪽 번호	32 / 33

위반내용	벌 칙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유해화학물질을 영업 또는 취급한 자	1억원이하 벌금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5,000만원이하 벌금
•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자	5,000만원이하 벌금
•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5,000만원이하 벌금
• 취급시설 설치검사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5,000만원이하 벌금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해임,퇴직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1,000만원이하 과태료
• 폐업·휴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하거나 휴업한 자	1,000만원이하 과태료

5.9. 기록 관리

본 규정과 관련된 기록은 아래와 같이 관리하며 일반관리사항은 문서화된 정보관리규정(HW-QESHP-751)에 따른다.

기록명	관리부서	양식번호	보존기한
환경관리계획서	안전환경관리부	HW-EI-832	5년

5.10. 관련 문서

1) 규정

- (1) 문서화된 정보관리 규정
- (2) 환경측면 영향성평가 규정
- (3) 교육훈련 규정

2) 지침서

- (1) 대기환경관리 지침서
- (2) 폐기물관리 지침서
- (3) 소음진동관리 지침서
- (4) 에너지관리 지침서
- (5) 오수관리 지침서
- (6) 물환경관리 지침서
- (7) 위험물관리 지침서

	환경경영시스템	문서번호	HW-EP-811
		개정일자	2023.08.01
	환경운영관리 규정	개정번호	0
		쪽 번호	33 / 33

(8) 유해화학물질관리 지침서